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9조(부가서비스 변경, 중단안내) ①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 <u>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u></p> <p>2.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p> <p>1. 제1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p>	<p>제9조(부가서비스 변경, 중단안내) ①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 <u>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u> <u>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u>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u>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u>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u>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p> <p>1.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 사유발생 즉시</p>	<p>-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관련 문구 정비</p> <p>-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통지방법 문구 정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p>제9조의3(카드 이용내역 표시) <u>카드사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u></p>	-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개선
<p>제10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p> <p>1.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카드이용의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p>	<p>제10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u>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1.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카드이용의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p>	- 공정위 변경명령에 따른 개정 (통지 없는 기한이익상실 조항)
<p>제13조 (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 메시지</p>	<p>제 13조 (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u>다음 각 호에</u>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u>또는 해지</u>할 수 있으며, <u>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u></p>	- 공정위 변경명령에 따른 개정 (최고 등의 절차없는해지 조항 부당한 기한이

현행	개정 (안)	비고
<p>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립니다.</p> <p>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p> <p>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체크카드 결제계좌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p> <p>3.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p> <p>4.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p> <p>5.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p> <p>6.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7.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8.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p>	<p><u>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 당일 고지).</u></p> <p><u>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u></p> <p>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체크카드 결제계좌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p> <p>3.카드이용대금(<u>단기카드대출(현금 서비스) 포함</u>), <u>장기카드대출(카드론)</u>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p> <p>4.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p> <p>5.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p> <p>6.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7.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u>8.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u></p>	<p>익상실사유 조항</p> <p>- “해지사유 발생 후” 라는 문구가 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한 최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 있음</p> <p>- 이로 인해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지 문구 삭제를 통한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 완화하고자 함</p> <p>- 제13조 ①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 (카드 이용 정지) ①항에 근거하므로, 문구 통일</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④ (생략)</p> <p>⑤ 본 조 제1항, 제3항의 사유로 체크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⑥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립니다.</p>	<p><u>어려운 경우</u></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 <u>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립니다.</u></p> <p>⑥ <u>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u></p> <p>1. <u>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u></p> <p>2. <u>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u></p> <p>3. <u>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4. <u>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u></p> <p>⑦ <u>본 조 제1항, 제3항, 제6항의 사유로 체크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u></p>	<p>- 조항 순서 변경</p> <p>- (변경전) 제13조 ⑥항 → (변경후) 제13조 ⑤항</p> <p>- 해지 사유 명확화</p> <p>-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할 경우,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 있음</p> <p>- 이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 3(카드의 해지)과 문구 통일, 해당 조항에 의거 해지 사유 구체화</p> <p>- 조항순서 변경</p> <p>- (변경전) : 제13조 ⑤항 →(변경후) : 제13조 ⑦항</p>

현행	개정 (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조항 신설에 따른 내용 수정 - (변경전) : “본조 제1항, 제3항의 사유로” 라는 문구 → (변경후) : 1항에 해지 문구 삭제로 1항 제외, 해지 관련 조항인 6항 추가
<p>제16조 (변경승인 등)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제16조(변경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변경 명령에 따른 개정 (약관 변경에 따른 고지절차가 미흡한 조항)
<p>부칙</p>	<p>부칙 <u>제9조의3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u></p>	